

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 단,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6조(물품의 보관 관리 등) ① 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출판
윤의 주의로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
다금은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.

제27조(재물 조사)

원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
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 9장 어르신들의 입 · 퇴소

제28조(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)

① 이용 정원 : 18명

② 이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
요양이 필요한 자

2.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
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,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

3. 모집 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.

가.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

나. 한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

다. 기존 입소자 및 종사자의 지인 소개 등

제29조(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)

① 계약 기간 :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의 인정서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하며, 장
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.

② 계약 목적 :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
다.

③ 1일 급여 비용 및 비급여 비용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
을 변경하여 적용하며,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.

1. 급여 비용

(단위 : 원)

등급		1	2	3~5
연도	2024	84,240(16,848)	78,150(15,630)	73,800(14,760)
	2025	90,450(18,090)	83,910(16,782)	79,240(15,848)

※ 가. () 안은 자기 부담금(20%) 나. 감경 대상자 : 8%, 12% 적용

2. 비급여 비용

(단위 : 원)

구분			식재료비	상급 침실료	계	비고
1인실	화장실	유	₩270,000	₩150,000	₩420,000	수급자 동일하게 적용
		무		₩100,000	₩420,000	
2인실	화장실	유	₩270,000	₩80,000	₩350,000	
		무		없음	₩270,000	
3인실			₩270,000	없음	₩270,000	

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(이용 계약에 포함)

1. 권리

- 가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 제공 요구
- 나.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으며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다.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라.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마.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2. 의무

- 가.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
- 나.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다.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다. 정보 변경 및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- 마. 어르신 외출 외박 시 사전에 신청을 서면 및 구두로 할 의무

⑤ 계약의 해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시설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4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5.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때
6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제30조(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 사항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제31조(서비스의 내용)